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경상북도교육감

2. 개정이유

- 교육부의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적·재정적 건정성을 확보하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01명” 에서 “5,493명” 으로 8명 감원 조정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을 “5,071명” 에서 “5,063명” 으로 8명 감원 조정

나.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함(안 별표 3)

1) 지방공무원 정원 총계 “5,501명” 에서 “ 5,493명” 으로 8명 감원 조정

2) 일반직 정원 총계 “5,049명” 에서 “5,041명” 으로 8명 감원 조정

3)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5,005명” 에서 “4,997명” 으로 8명 감원 조정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신설(안 제5조, 안 별표4)

1) 한시정원 정원 총계 5명으로 지방(기술)서기관 1명,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3명을 신설

라. 기관별·직급별 조정 내역

(단위: 명)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493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5,041	-			
3 급	3		3		
3~4급	5		5		
4 급	20	1	18	1	
5급 이하 소계	4,997	-			
전문경력관 소계	16	-			
연구직 계	24	-			

연구사	24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특정직 계	42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9	-	25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75	-			

마. 한시정원 직급별 신설 내역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본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일반직 4급	1	2025. 12. 31.
	일반직 5급 이하	4	
	소계	5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감축하여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신설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계 5,501명에서 5,493명으로 8명을 감원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을 5,071명에서 5,063명으로 8명을 감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의 별표 3은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직급별 총계 5,501명에서 5,493명으로 8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계 5,049명에서 5,041명으로 8명을 감원하며,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5,005명에서 4,997명으로 8명 감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5조의 별표 4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시정원 계 5명의 정원을 신설하고, 직급별 지방(기술)서기관 1명,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3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지역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신설하여 지역현안에 맞춰 교육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